

<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>

개정 전	개정 후
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116조의3(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)</p> <p>① 법 제167조의5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”란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</p> <p>1.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(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)</p> <p>2.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. 다만,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.</p> <p>3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</p> <p>4.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</p> <p>5.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 및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</p> <p>6.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(이하 이 조에서 “근로소득원천징수부”라 한다)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</p> <p>가. 「국민연금법」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</p> <p>나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</p>	